

의안 번호	제3호
의 결 년 월 일	2011. 7. 28.(목) (제 1 회)

의
결
사
항

2012년도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출자	국무총리실장 임채민
제출 년 월 일	2011. 7. 28.(목)

1. 의결주문

- '2012년도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가재원의 체계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12년도 지식재산 자원배분 방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1)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추진 필요성

- 지식재산 전략은 지식재산이라는 국가 Capital을 축적·활용하여 국가의 근본체질을 전환시키는 종합적·미래지향적 전략
- 정부차원에서 지식재산 사업을 기획·조정하여 투자효과 극대화
- 민간에도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중장기적인 비전과 시계 하에 지속적·일관된 투자전략 수립 필요

(2) 지식재산 투자 현황 및 시사점

가. 국내 지식재산 투자 현황

- (지식재산 사업)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의 조성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기금 등을 투입하는 사업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순수연구개발(기초·응용·개발 연구) 활동은 지식재산 사업에 포함되나, 시설·장비 구축 등은 제외

- (투자규모) '11년 예산 기준 정부의 지식재산 투자규모는 9.1조원 (국가연구개발 7.8조원)으로 총 예산(309.1조원)의 2.9%를 차지
 - 분야별로는 창출분야가 7.45조원*(82.0%)으로 가장 많고, 활용 8,849억원(9.7%), 인프라 6,442억원(7.1%), 보호 1,069억원(1.2%) 순
 - * 예산규모가 큰 국가연구개발 사업 대부분이 창출분야에 포함되는데 기인
 - 부처별로는 지경부(3.7조원, 40.5%), 교과부(2.2조원), 중기청(1.0조원) 순

나. 해외 사례

- (미국) '08.10월 지식재산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예산의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조직의 우선화 법」 제정
 - *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장관급)을 신설, 정책조정 기능 강화
 -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이 정부의 자원(인력·예산·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평가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유도
- (일본) '02년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을 표방하고, '03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추진
 -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수립과 관련 예산의 편성을 동시·병렬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의 실행가능성을 확보
 - * 초기에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창출·보호·활용 등 각 부문 간 균형된 재정투입 ⇒ 제2기('06년) 이후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자원 집중투입

(3) 2012년도 자원배분방향 심의 개요

- (추진방향) 금년은 「지식재산 기본법」 발효 시기(7.20일)를 고려, 정부 재정사업 중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심의
 -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지재위의 심의에 앞서, 민간 전문가로 「지식재산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51명)하여 사전 검토

□ (심의대상) 심의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식재산 관점에서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10대 핵심 분야 선정

○ 심의대상 사업은 75개 사업, 1조 7,964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사업은 1조 2,832억원(26개), 일반 재정사업은 5,132억원(49개)

* 사업규모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사업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4) 2012년도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 자원배분 기본방향 >

-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식재산 투자의 전략적 확대
- ◆ 분야별·동태적(중장기 투자방향 포함) 투자전략 수립
- ◆ 지식재산 투자의 효율성 제고(정부·민간 간 역할분담 포함)
- ◆ 국가재정운영계획 등 관련 중장기 계획 등과의 정합성 유지

1 표준·원천특허 창출 및 지원

- 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 전략이 민간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간·노력이 소요되므로 상당기간 동안 정부지원 지속 및 확대
- 연구개발 기획 시 지식재산 관점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도록 제도화, 연구노트 활용도 제고에 투자 확대

2 지식재산 침해예방·대응강화 및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촉진

- 지식재산에서 '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전체예산 대비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보호분야 전반에 투자 확대
 - * 유관부처 간 정보공유·사업조정 등을 위해 해외 지재권 보호협의체 운영 필요
- 디지털·온라인 분야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투자,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지속적·안정적 지원

③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존중문화 조성

-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적·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디지털 환경에 따른 온라인 교육 강화
- 지식재산 인식제고 사업(전시회·경진대회)을 기술사업화와 연계하여 질적 효과 제고,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에 지재산 전략 연계

④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촉진

- 기술활용 창업 시 창업 단계별로 자금 지원 및 성공하지 못한 경험도 존중되는 환경 조성, 저작권을 활용한 창업지원 사업 개발
- 장기적으로 청년층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교육부·노동부 등) 간 협조를 통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 * 교과부의 기업가 정신 교육, 노동부의 창업인턴제 사업 간 연계강화 등

⑤ 지식재산 이전·사업화 역량 강화

- 바이오·의료 분야와 같이 전 세계적 보호가 필요한 특허 등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핵심특허를 선별·평가하고 지원
 - * 대학·공공기관 특허 중 상당수가 국내 및 소수의 국가에 한정되어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경쟁력이 저조한 상황
- 산업별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미활용 특허의 관리·활용성 제고를 위해 신탁관리업 투자 확대

⑥ 신지식재산 기반 구축

- 신지식재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신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 적극 추진
- 사업 기획 시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는 채널 확보
 - * 신지식재산권 관련 담당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급

7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지식재산 인력양성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시너지 창출 및 효율적 재정 운용
- 지식재산 인력의 원활하고 균형적인 수급을 위해 인력 수요의 구체적 특성과 인력 풀 등에 대한 파악 및 분류 추진

8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 촉진

- 지식재산 기초정보 생성, 지식재산 정보관리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인프라 구축 성격의 사업에 중점 투자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정보화를 통한 고품질 종자 생산 지원 및 국가 유전자원 주권 선점 등의 사업 추진 시급

9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지역 지식재산 활동 핵심주체들의 체계적 연계·협력 및 구심 조직* 구축, 지자체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등 전문인력 확보
- *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
- 지역 대학·연구소의 우수 특허기술 발굴 및 창업 지원, 지역 전통문화 발굴·보호·활용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10 투자효율성 제고 분야 (기술이전·거래 전담조직 지원·육성 관련)

- 자생력이 미흡한 기술이전·거래 전담조직(TLO)의 역량 제고를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 추진
- *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TLO 자립계획을 평가요소로 포함, 사업추진 초기 공동워크숍 개최, TLO-정부-관리기관 간 정기 실무협의회 운영 등

(5) 향후 계획

- 심의결과를 국과위·재정부에 제출,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
 - 분야별 자원배분방향 심의 내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반영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과 재정투입 계획과의 연계 강화
- 관계부처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예산 집행, 지재위는 사업의 성과를 분석(12년 상반기)하여 차기 자원배분방향 심의 시 반영

2012년도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안)

2011. 7. 28.

국무총리실



목 차



I.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개요	1
1. 추진 근거 및 목적	1
2. 필요성	1
II. 지식재산 투자 현황 및 시사점	2
1. 국내 지식재산 투자 현황	2
2. 해외 사례 및 시사점	4
III. 2012년도 자원배분방향 심의 개요	6
1. 추진 방향	6
2. 심의 체계	7
3. 심의대상 분야	7
IV. 2012년도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8
1. 자원배분 기본방향	8
2. 분야별 자원배분방향	9
V. 향후 계획	32
1. 정부 예산안 편성	32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32
3. 성과분석	32

I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개요

1

추진 근거 및 목적

- 「지식재산 기본법」은 지식재산 관련 자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심의토록 규정

- ◆ (법 제6조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3. 지식재산 관련 자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 (시행령 제13조 제2항) 위원회가 자원배분방향등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재원의 체계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식재산 투자의 효율성 제고

2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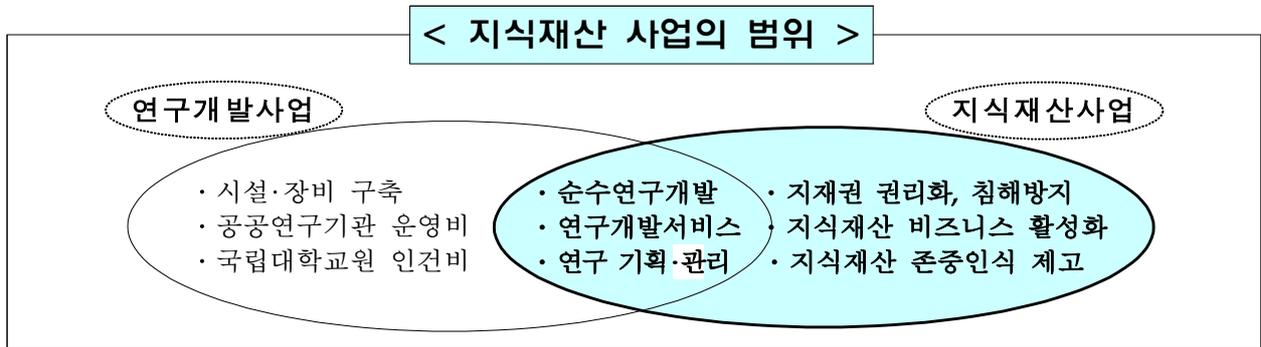
- 지식재산 전략은 지식재산이라는 국가 **Capital**을 축적·활용하여 국가의 근본체질을 창조형·지식기반형으로 전환시키는 종합전략
 - 개별부처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해 온 지식재산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기획·조정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과 극대화 필요
 - 공공부문은 물론 기업·대학 등 민간 부문에도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식재산 전략은 세기(世紀)를 넘어서는 미래지향적 전략
 - 중·장기적인 비전과 시계(視界) 하에 명확한 목표를 정립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투자전략의 수립·추진 필요

II 지식재산 투자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 지식재산 투자 현황

1 지식재산 사업의 범위

- 지식재산 사업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의 조성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기금 등을 투입하는 사업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순수연구개발(기초·응용·개발 연구) 활동은 지식재산 사업에 포함되나, 시설·장비 구축 등은 제외



* 지식재산 사업의 분류는 <붙임> 참조

2 지식재산 투자 현황

- '11년 예산 기준으로 정부의 지식재산 투자 규모는 9.1조원 (국방분야 제외) 수준으로 총 예산(309.1조원)의 2.9%를 차지
 -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7.8조원, 일반 재정사업은 1.3조원
- 부처별로는 대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보유한 지경부(3.7조원, 40.5%)가 가장 많고, 교과부(2.2조원), 중기청(1.0조원) 순
 - * 법무부·외교부 등은 별도의 예산사업 없이 일반인건비에 포함

□ 분야별로는 **창출분야가 7.45조원*(82.0%)**으로 가장 많고, 활용 8,849억원(9.7%), 인프라 6,442억원(7.1%), 보호 1,069억원(1.2%) 순

* 예산규모가 큰 국가연구개발 사업 대부분이 창출분야에 포함되는데 기인

□ 세부 분야별 지식재산 투자현황을 보면,

- **창출분야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대부분(5.24조원, 70.4%)**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연구개발 사업은 2.0%**에 불과
- **활용분야는 거래·사업화와 기반 조성**이 거의 균등한 규모로 구성
- **인프라분야는 인력양성이 가장 많은 부분(4,174억원, 64.8%)**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이 최소(389억원, 6.0%)**
- **보호분야는 권리화 및 침해대응 예산이 비슷한 규모로** 배분되고 있으며, **분쟁해결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미약**

< 분야별 지식재산 투자 현황('11년 예산) >

분 야	세부 분야	투자규모	
		예산(억원)	비중(%)
창 출	①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52,444	57.7
	② 문화콘텐츠분야 연구개발	1,514	1.7
	③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	2,096	2.3
	④ 지식재산 창출 기반 조성	18,482	20.3
	소 계	74,536	82.0
보 호	⑤ 지식재산 권리화	516	0.6
	⑥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474	0.5
	⑦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78	0.1
	소 계	1,069	1.2
활 용	⑧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4,390	4.8
	⑨ 지식재산 활용 기반 조성	4,459	4.9
	소 계	8,849	9.7
인프라	⑩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	389	0.4
	⑪ 지식재산 인력양성	4,174	4.6
	⑫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	1,164	1.3
	⑬ 국가 지식재산 관리 및 대응 시스템	714	0.8
	소 계	6,442	7.1
	총 계	90,896	100.0

2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

미국

- '08.10월 지식재산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예산의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조직의 우선화 법**」 제정
 -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장관급)을 신설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
- '10.6월 「**자원·조직의 우선화 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인 “**지식재산집행 공동전략**” 수립
 -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이 정부의 **자원(인력·예산·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평가**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유도

2

일본

- '02년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을 표방하고, '03년 「**지적재산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추진
 -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수립과 관련 예산의 편성을 동시·병렬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의 실행가능성을 확보
- 초기에는 지식재산 전반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창출·보호·활용 등 각 부문 간 균형된 재정투입** 기초를 유지
 - 제2기('06년) 이후 **핵심정책 중심의 추진방식으로 변화**하여 제3기('09년) 이후에는 **중점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재원을 집중 투입**
 - * '10년의 경우 국제표준화 전략, 콘텐츠 강화 전략, 지식재산의 산업횡단적 강화 전략 등 3대 전략분야에 총 910억엔(약 1.2조원) 투입

<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핵심시책의 변화 추이>

시 기	제1기(2003-2005)	→	제2기(2006-2008)	→	제3기(2009-2013)
기본방향 · 핵심시책	지적재산 사이클 (창조·보호·활용) 확립, 지적재산 인재양성		지적재산정책의 지역 및 국제전개, 콘텐츠 진흥, 산학협력 추진 등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재전략의 강화, 창조산업의 성장 전략 등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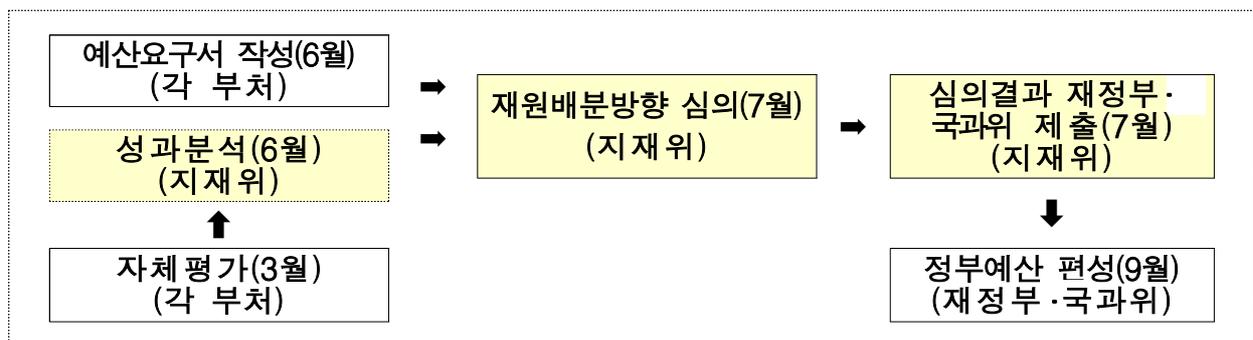
- 미국·일본 등은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에도 역점
 -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미국은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조, 일본은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원천기술의 표준화’ 등에 역점
 - 미국은 예산집행 성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일본은 전략 수립과 예산편성을 병행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의 효과성 제고
 - 우리 「지식재산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식재산 전략을 재정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매년 자원배분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예산편성 및 민간 지식재산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사후적으로 지식재산 사업의 추진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기 자원배분방향 수립에도 반영
- ◆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방향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의 협조 필요
 - ◆ 일본의 사례를 감안할 때,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본격 추진하는 첫 해인 '12년에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부 재원을 집중할 필요

Ⅲ 2012년도 재원배분방향 심의 개요

1 추진 방향

- 금년은 「지식재산 기본법」 발효 시기(7.20일 시행)를 고려할 때,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데 한계
 - 민간의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자료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은 정부 재정사업에 대해서만 재원배분방향을 마련
 - * 내년부터는 정책연구 등을 토대로 민간의 지식재산 활동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재원배분방향 수립
- 별도의 성과분석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재원배분방향 심의·의결
 -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 지식재산 관점에서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심의

< 재원배분방향 추진 체계 (기본법 및 시행령 기준) >



- 부처 제출 자료 및 사업설명회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 최소화
 - 예산요구서, 중기사업계획서('11~'15년),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 등 기존 자료를 참고하여 서면 심의
 - * 사업설명회는 자료 미흡으로 심의가 어려운 사업, 부처요청 사업 등 5개만 실시

2

심의 체계

-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민간 전문가로 「지식재산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51명)하여 사전 검토
 - 심의위원회는 대상사업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심의의견서 작성
 - * (심의기준) 지식재산 관점에서 시급성·중요성, 목적의 적정성, 성과 달성도,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 및 적정성, 자원부담 적정성, 기대효과 등 8대 기준
-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원배분방향(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

3

심의대상 분야

- 심의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식재산 관점에서 중요성·시급성이 높은 10대 핵심 분야 선정
 - 심의대상 사업은 75개 사업*, 1조 7,964억원 규모로 연구개발 사업은 1조 2,832억원(26개), 일반 재정사업은 5,132억원(49개)
 - * 사업규모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심의대상 사업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 심의대상 분야 및 규모 (단위: 억원) >

분야명	'11년 예산	'12년 요구	증가율(%)
① 표준·원천 특허 창출 및 지원	1,677	1,698	1.2
② 지식재산 침해예방·대응강화 및 공정한 이용 촉진	270	380	40.5
③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존중문화 조성	71	105	47.5
④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촉진	2,351	2,528	7.5
⑤ 지식재산 이전·사업화 역량 강화	1,247	958	△23.2
⑥ 신(新)지식재산 기반 구축	1,141	1,257	10.1
⑦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301	347	15.2
⑧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 촉진	803	901	12.2
⑨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5,993	6,276	4.7
⑩ 투자효율성 제고(유사·중복 우려 분야)	2,866	3,517	22.7
합 계	16,720	17,964	7.4

IV

2012년도 지식재산 자원배분방향

1

자원배분 기본방향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식재산 투자의 전략적 확대
 - 지식재산을 활용한 국가·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투자를 확대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부 재원을 집중

- 분야별·동태적 투자 전략 수립
 - 주요 분야별로 투자방향을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편성 과정과의 조화 도모
 - '12년 부처 요구 사업 외에 중장기 투자방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보완

- 지식재산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개별 부처별로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유사·중복사업을 연계·통합하여 중복·낭비 방지
 - 민간의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등에 재정 투자를 집중하여 정부와 민간의 효과적인 역할분담 도모

- 관련 중장기 계획 등과의 정합성 유지
 - 국가재정운용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등 유관 계획의 재정투자 방향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연계

2

분야별 자원배분방향

1

표준·원천특허 창출 및 지원

□ 심의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예산(A)	'12년 요구(B)	증감	
			B-A	%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개발 (문화부)	24,106	22,322	△ 1,784	△ 7.4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 (특허청)	8,520	6,840	△ 1,680	△ 19.7
정보통신미디어산업 원천기술개발 (지경부)	41,044	41,401	357	0.9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 원천기술개발 (지경부)	30,108	35,079	4,971	16.5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 (문화부)	46,000	50,002	4,002	8.7
특허기술조사분석 (특허청)	17,944	14,141	△ 3,803	△ 21.2

□ 현황 및 문제점

-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이나, '10년 IT분야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ITU)에 신고된 표준특허는 전체의 3.3%*에 불과

* 미국의 1/13, 일본의 1/7 수준

- 국가 R&D 전주기(기획-관리-평가) 시스템에서 지식재산 전략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이 미흡
- 특허 비용 및 인식의 부족 등으로 대학·중소기업의 국제특허 성과 미약

□ 중장기 투자방향

- 연구 역량 또는 기술적 역량의 비교우위가 있거나 고부가가치 개발 성과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
- 지식재산과 연계된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등 연구개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미래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국가 기간산업 및 IT·자동차·조선 분야의 핵심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원천·표준 특허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

□ 2012년도 재원배분방향

-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 민간 IP-R&D(지식재산-연구개발) 연계전략이 민간에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상당 기간 동안 정부지원 지속 및 확대
- (유사사업의 통합운영) 디지털 콘텐츠 원천기술개발 및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관련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집중 지원
 - 다만, 별개 사업으로 진행 시 효율 저하 및 중복투자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통합 또는 연계 등 효율적 예산집행 방안 검토
- (지식재산 관점 기획) 지식재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R&D 사업의 기획 시 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도록 제도화
 - 기술개발 단계별 표준·원천 특허 획득 추진전략 및 목표가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표준 및 지재산 확보를 위한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제시
 - R&D 예산의 일정 부분을 원천특허·표준특허 확보에 투자
- (연구노트 활용) 지식재산 중심 국가R&D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노트의 활용도 제고
 - 민간 업계 R&D에도 연구노트 활용률을 제고하여 민간의 효율적인 지식재산 중심의 R&D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

2

지식재산 침해예방·대응강화 및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촉진

□ 심의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예산(A)	'12년 요구(B)	증감	
			B-A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문화부)	7,918	7,368	△550	△6.9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특허청)	4,300	4,604	304	7.1
해외 지식재산 보호활동 강화 (특허청)	6,343	6,598	255	4.0
밀수단속 (관세청)	6,195	6,195	0	0.0
직무발명 활성화 (특허청)	943	868	△75	△8.0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유통 진흥 (문화부)	1,334	6,117	4,783	358.5
디지털 저작권 수사 지원 (문화부)	-	1,192		(순증)
국민 오픈 모니터링 (문화부)	-	5,049		(순증)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의 지재권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보호순위는 32위(10년)로 미흡한 상황
-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우리 음악·드라마·영화 등 저작물들이 해외(중국, 동남아 등)에서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와 함께 지재권분쟁이 연평균 25%씩 증가하여 막대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
- 지식재산의 중요성 및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증가 추세

□ 중장기 투자방향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예방 및 현지 침해대응 지원의 성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
- 지식재산 보호기반 조성에 비교우위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

- 지식재산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높은 대응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

□ 2012년도 재원배분방향

- (보호분야 투자확대) 지식재산에서 ‘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예산대비 보호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므로 향후 전반적으로 투자 확대
- (온라인분야 침해 대응 강화) 향후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가 디지털·온라인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투자
- (해외 지재권 보호 협의체 운영) 해외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지식재산 분야별 특성에 맞게 유지하되,
 - 유관부서(특허청·문화부·법무부·외교부 등) 간 정보공유, 사업조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현지 거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 제공
- (국제무역 협상 대응)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시행과 관련하여 국내 지식재산법 보호 체계 및 상대국의 법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을 위해 지원
- (직무발명 활성화 지원) 직무발명 제도는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기업·국가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
 - 민간은 직무발명 제도의 활성화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없으므로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

3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존중문화 조성

□ 심의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예산(A)	'12년 요구(B)	증감	
			B-A	%
저작권 교육 및 홍보 (문화부)	5,299	4,595	△704	△13.3
저작권 관련 지식정보 기반조성 (문화부)	-	4,000		(순증)
발명장려 행사 (특허청)	1,597	1,640	43	2.7
지식재산 교육 운영 (특허청)	204	238	34	16.7

□ 현황 및 문제점

- '09년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불법저작물 침해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09년, 2.2조원)
-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물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급증하였으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미흡
 - * 청소년의 불법 영상물 구매횟수는 급증('09년, 12,507 → '10년, 71,319)하나, 초중고 교사·학생 중 저작권교육 참가자 수는 4.4%('10년)에 불과
- 국내 지식의 창출·보호·활용 글로벌화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증가에 따라 국격 제고를 위한 지재권 교육 요구 증가

□ 중장기 투자방향

-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활용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의식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 분리된 개별사업 및 단발성 행사 위주의 교육에서 지속적·체계적·맞춤형 교육에 우선 투자
- 한정적 대상 지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로 투자 전략 전환

□ 2012년도 재원배분방향

- (지원방식) 인식제고 사업은 민간의 추진 유인이 적고, 권리자와 소비자 간 공정하고 균형적인 관점에서의 교육·홍보 필요성 감안 시 공공기관의 재원 부담이 바람직
 - 다만, 대국민 홍보를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소요 예산의 부담을 고려하여 민·관 협력 추진 필요
- (교육과정의 강화)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체험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디지털 환경에 따른 온라인 교육 강화
 -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교과부와 문화부 간 협력체계 강화
- (관련 사업과의 연계) 인식제고 사업과 관련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인식제고를 위한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기술사업화와 연계하여 질적 효과를 더욱 제고
 - 위조상품·불법유통 단속과 인식제고 사업 간 연계 추진
- (녹색산업과 지재권의 연계) 국가 비전인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시 지재권 전략을 연계하여 국가의 부 창출에 기여
- (개도국 지재권 교육) '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도국 지재권 교육은 계속 지원이 필요
- (저작권 법제·동향 조사) 저작권 관련 법제 및 산업동향 조사 분석은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제도 개선 및 글로벌 산업의 전략적 해외 진출을 위해 필수적

4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촉진

□ 심의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예산(A)	'12년 요구(B)	증감	
			B-A	%
신기술창업인프라 구축 (중기청)	30,187	31,000	813	2.7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중기청)	78,800	80,000	1,200	1.5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문화부)	2,103	2,166	63	3.0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농식품부)	124,000	139,600	15,600	12.6

□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재산 성과 확산체계의 선진화 및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수익 창출 필요
- 불법 저작물 유통이 관련 산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미비, 기술창업의 경우 실패의 위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망 필요
- 예비창업자 및 연구자의 기업가 정신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

□ 중장기 투자방향

-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투자 확대
- 단기간에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식재산 기반의 예비 창업자 및 아이템에 우선 투자
-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창업 지원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차원에서 투자규모 확대

- 저작물의 창출·보호·활용 간 균형적인 자원배분이 필요하며, 저작권을 활용한 창업 지원 사업 개발

□ 2012년도 자원배분방향

- (창업단계별 자금 지원) 기술을 활용한 창업시 창업 단계별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성공하지 않은 경험도 존중 받고 기업이나 개인이 연락처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창작자의 의욕 고취 및 실질적 보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
 - 장기적으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저작권 창출 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 검토
 - (기술벤처 기업의 지재권 전략) 지식재산은 창업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이며, 기술벤처 기업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전략 무기 중 하나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지재권 전략 필요
 - 기술창업 촉진 시 창업자의 아이템이 특허로서 활용·보호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특허조사 및 특허전략 지원
 - (기술활용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서의 중요성과 시급성 및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투자 확대
 - 실패 가능성이 큰 반면, 성공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민간에 직접적 파급효과를 미치므로 정부재원 비율(70%이내)은 적절
 - 창업시 지식재산의 중요성 및 특허전략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 관계부처(중기청·교과부·노동부 등) 간 협조를 통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 * 교과부의 기업가정신 교육, 노동부의 창업인턴제 사업 간 연계강화 등

5

지식재산 이전·사업화 역량 강화

□ 심의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예산(A)	'12년 요구(B)	증감	
			B-A	%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 (특허청)	5,130	5,477	347	6.8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특허청)	8,099	8,836	737	9.1
중소 지식서비스기업 육성 사업 (중기청)	21,000	22,000	1,000	4.8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 기반구축 (지경부)	2,000	2,174	174	8.7
기술확산 지원(주력 및 신산업) (지경부)	24,700 (17,300)	24,700 (17,300)	0 (0)	0.0 (0.0)
국가기술자산 활용 (지경부)	38,200	10,000	△28,200	△73.8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지경부)	30,000	27,000	△3,000	△10.0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 (문화부)	3,000	3,000	0	0.0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공공연 보유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을 통한 산업적 활용은 개선 추세이나, 선진국 등과 비교해서는 큰 격차가 있는 상황
- 지식재산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 업체들은 영세한 규모와 경험 부족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한계
- 지식재산이 수익창출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생태계는 미성숙

□ 중장기 투자방향

- 기존의 창출된 지식재산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 기술이전 제도 및 체계 구축에 우선 투자
- 기술이전·사업화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저변 시스템 강화에 우선 투자
- 글로벌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에 우선 투자

□ 2012년도 재원배분방향

- (핵심특허 선별지원) 바이오·의료와 같이 전 세계적 보호가 필요한 분야는 국가 차원에서 핵심특허를 선별·평가하고 지원
 - * 대학·공공기관 특허 중 상당수가 국내 및 소수의 국가에 한정되어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경쟁력이 떨어짐
- (사업 간 연계)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들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부처 간 역할분담, 협력 및 보완시스템 정립
- (기술신탁제도 활성화) 미활용 특허의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신탁관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글로벌 기술이전 역량 강화) TLO 육성지원 외에도 민간 전문 그룹과의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및 글로벌 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도 일정 규모의 예산 배정
-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확대 효과가 크나, 대학·공공기관에 비해 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
 - 각 산업별로 중소기업 맞춤형 지적재산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 (창의자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에 일정 부분이상의 자금투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추후에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생산클러스터 활용성 제고)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완성된 생산클러스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용화 기술개발 계획에 대한 보강 필요

6

신지식재산 기반 구축

□ 심의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예산(A)	'12년 요구(B)	증감	
			B-A	%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농식품부)	1,000	3,500	2,500	250.0
동식물 자원산업화 지원 (농식품부)	3,520	10,310	6,790	192.9
원원종 및 원종생산 (농식품부)	3,950	4,140	190	4.8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농식품부)	4,773	5,145	372	7.8
차세대 바이오그린 21 (농진청)	65,000	65,000	0	0.0
작물시험 연구 (농진청)	35,861	37,582	1,721	4.8

□ 현황 및 문제점

- 신지식재산 분야, 특히 농업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인식이 타 산업분야에 비하여 미흡
- 신지식재산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나 대부분의 사업은 지식재산의 관점보다는 일반적인 예산사업의 관점에서 기획 및 시행
- 한·EU FTA 등 식별표지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식별표지에 대한 보호가 미흡
-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문화에 녹아있는 전통자원은 막대한 부가가치의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발굴되지 않고 있음

□ 중장기 투자방향

- 공공성 및 효과 파급성을 고려할 때, 농업 및 생명공학 분야 등의 신지식재산권 권리화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집중 투자
- 일반적 예산사업이 아닌 신지식재산 관점에서의 사업기획 및 투자 추진 강화

□ 2012년도 재원배분방향

- (식물신품종) 민간 종자업체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단지 및 센터 조성, 인턴제를 활용한 인력양성, 전략품목 R&D 투자 확대 등 품종개발 기반구축에 투자 확대
 - 품종보호 국경조치 강화 및 종자위원회 직권조정권한 실효성 제고 등 품종보호권 침해대응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생물자원) 정기적 생물자원 보유현황 조사,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한 생물자원의 발굴·확보 및 기반 구축
- (전통자원) 민관 합동의 전통자원 현황 및 현장사례 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국제적 논의에 사전 대응
 - 고서·문헌·구전 및 유·무형 문화재로부터의 전통자원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설정 등에 투자
- (지리적 표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리적표시 침해 방지를 위한 지리적 표시 목록 교환, 오남용 사례조사, 네트워크 강화 등 국제적 협력에 투자
 - 지리적 표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추진
- (시스템 구축) 신지식재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신지식 재산 창출·보호·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적극 추진
 - 유전자원·종자사업 외의 신지식재산(전통자원,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법제 등을 마련
- (인식제고) 사업 기획 시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고려가 반영 되는 채널 확보
 - * 신지식재산권 담당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급

7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심의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예산(A)	'12년 요구(B)	증감	
			B-A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부)	1,750	3,150	1,400	80.0
국내외 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문화부)	4,480	4,870	390	8.7
민간인력 양성 (특허청)	317	245	△72	△22.7
발명교육 활성화 (특허청)	9,759	9,896	137	1.4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특허청)	5,197	5,759	562	10.8
심사관신기술교육 (특허청)	677	677	0	0.0
심사관 해외 훈련 (특허청)	604	604	0	0.0
여성발명 진흥 (특허청)	1,553	1,623	70	4.5
지식재산 이러닝 운영 (특허청)	2,454	2,657	203	8.3
방송통신 전문교육 강화 (방통위)	3,293	5,188	1,895	57.5

□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다수 부처에서 분산적·단발적으로 추진 중이며, 여전히 연구자들은 교육 기회 부족을 호소
- 수요 인력에 대한 조사와 인력양성 과정의 기획이 미흡하고, 양성 과정 중 정기적·지속적 수급 동향 모니터링이 부재
- 인력양성의 양적 성과는 증가하나, 질적 성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며, 양성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활용하는 체계 미흡
- 인력양성 결과가 기획·수행에 피드백되는 선순환체계 미확립

□ 중장기 투자방향

- 지식재산 인력에 대한 수요 적합성을 고려하여 인력양성 프로그램 평가 및 투자

-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 추진 후, 지식재산 인력 기반의 확대가 가능한 사업 선택 및 투자
-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에 우선 투자

□ 2012년도 재원배분방향

- (유사사업 조정) 지식재산 인력양성 사업은 유사 사업이 다수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어, 통합적 기획·조정 필요
 - 다수 부처에서 진행 중인 창의력 증진 교육 사업의 연계 추진
- (성과지표 개발) 인력양성 사업은 정성적 효과가 증장기적으로 발생하므로 정량적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는 타당성 검토에 한계
 -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이에 따른 평가를 거쳐 사업 규모 조정
- (인력 수급 파악) 지식재산 인력의 원활하고 균형적인 수급을 위해 수요의 구체적 특성과 인력 풀에 대한 파악·분류 추진
- (문화콘텐츠 분야 인력양성) 정부 재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수혜 기업은 일부 비용의 분담 필요
- (발명교육 활성화) 발명교실 운영은 시·도 교육청 산하에 설치되어 관내 학생들이 발명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므로, 시·도 교육청과의 재원 분담 확대
- (심사·심판 인력 전문성 제고) 증가하는 심사인력에 부합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급변하는 기술 변화 및 환경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토록 투자 확대

8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 촉진

□ 심의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예산(A)	'12년 요구(B)	증감	
			B-A	%
기초연구기반구축(전문연구정보활용) (교과부)	43,760 (2,800)	50,684 (3,146)	6,924 (346)	15.8 (12.4)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 자원화 (문화부)	2,930	2,400	△530	△18.1
국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구축 (문화부)	2,045	1,564	△481	△23.5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 (문화부)	1,355	1,249	△106	△7.8
농업기술 정보화 (농진청)	5,413	5,335	△78	△1.4
특허정보 활용 인프라구축 (특허청)	5,929	6,384	455	7.7
특허정보 DB구축 (특허청)	9,474	10,768	1,294	13.7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특허청)	9,384	7,697	△1,687	△18.0
공공저작물 집중관리 체제 구축 (문화부)	-	4,000		(순증)

□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재산 정보 분야는 국가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 중
- 국가적 차원의 접근 없이 부처별로 독자적 정보 시스템을 개별 구축하여 정보서비스의 체계화가 미흡
- 과학기술, 산업, 특허 등 부처별로 상이한 정보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활용이 곤란
- 공유저작물, 오픈소스SW 또는 공공저작물의 양이 방대하고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집중관리체제 구축 미흡

□ 중장기 투자방향

- 지식재산 정보의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큰 사업에 우선 투자

- 지식재산 정보사업 중 다른 지식재산의 생산과 활용에 파급 효과가 큰 시너지 창출분야에 우선 투자
-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선제적 사업에 우선 투자
- 민간에서 자발적 투자가 어려운 지식재산 정보생성 분야의 사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정부사업에 우선 투자

□ 2012년도 자원배분방향

- (지원방식)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인프라 구축적 성격의 사업*에 중점 투자

* 지식재산 기초정보 생성분야, 지식재산 정보관리분야 등

- (중장기 계획) 정보인프라 구축은 지속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중장기 계획 하에서 정보생성분야에 지속적 투자를 실시하여 민간 유통 및 활성화 도모
- (기준마련) 대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사업(특히정보 관련)의 경우, 검색서비스 질과 DB구축의 범위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표명
- (수요반영)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DB 설계·구축
- (국가식별체계 확산) 지식자원의 접근 지속성 유지와 저작권 등록 단계에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식별체계의 보급·확산과 등록 시스템 개선
- (농업분야 정보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종자생산 지원 및 국가 유전자원 주권 선점 등의 사업 추진 시급

9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심의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예산(A)	'12년 요구(B)	증감	
			B-A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경부)	61,450	58,051	△3,399	△5.5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경부)	101,618	87,100	△14,518	△14.3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경부)	148,388	86,050	△62,338	△42.0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경부)	265,520	373,095	107,575	40.5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 (특허청)	22,323	23,265	942	4.2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사업이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에 막대한 부분을 차지
 - *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 창출하는 총생산 비중('09년 75.9%)
-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와 지역지식재산 센터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이나,
 - 지역 대학·연구소의 R&D를 기획·관리하는 지식재산 담당부서 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미흡으로 체계적 지식재산 관리 미흡
- 지역 지식재산 경영의 구심체가 없어 지식재산 활동에 한계

□ 중장기 투자방향

-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및 투자 지원을 지방까지 확산 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활동 역량을 강화
- 지역 지식재산 활동이 체계적으로 도입 및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 우선순위 부여
- 지역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인력 등 인프라 확충에 우선 투자

□ 2012년도 재원배분방향

- (지역 지식재산 전략) 지역 지식재산 활동의 인프라로서 지자체 조례 제정 지원 및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지식재산 발전전략 수립 지속적 지원
- (지식재산 인력 확보) 지자체의 지식재산 전담인력 및 변리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므로 우선적으로 투자
- (우수인력 인센티브) 지역 경제발전과 혁신 기여도가 높은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도전의식 고취
-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지역지식재산센터, 연구소 및 대학, 테크노파크, 기업 등 유관기관간 체계적 연계·협력 및 구심점 형성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투자
- (지역 중소기업 지원)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지자체 차원의 재원 확보
- (지역 연구개발) 지역 대학·연구소의 R&D를 지식재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도록 R&D 기관의 지식재산 담당부서 역량 강화
 -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의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전통산업) 지역 전통문화 등 전통산업 관련 지식재산의 발굴·보호·활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산업단지 클러스터링) 지역 산업단지의 지재권에 대한 통합·관리 추진, 지식재산 역량을 클러스터링별로 집중

10

투자효율성 제고 분야

(1) 표준특허 및 표준화 관련

□ 심의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예산(A)	'12년 요구(B)	증감	
			B-A	%
표준특허 창출 지원 (특허청)	1,600	1,734	134	8.4
방송통신 표준화활동 지원 (방통위)	11,148	11,148	0	0.0
방송통신 표준개발 지원 (방통위)	6,054	7,093	1,039	17.2
저작권기술 지원 및 표준화 (문화부)	2,650	1,800	△850	△32.1
산업기술 표준화 및 인증 지원 (지경부)	33,505	36,613	3,108	9.3

□ 현황 및 문제점

- 국제 표준 선도 및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과제가 여러 부처를 통해 동시에 진행
- 단순히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특허선점을 통한 시장지배라는 성과로 연결될 것인지가 관건

□ 효율성 제고 방안

- (중복성 여부) 각 기술의 독자성 및 관련 부처의 업무 고유 역영
이므로 각 사업은 중복이 아니며 기술 분야별 분배는 적절
 - 각 사업이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표준 확보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투자 확대
-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 국가차원의 표준 관련 지식재산을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요도가 높음
 - 다만, 현재는 방어적 확보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향후 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차원이 표준 관련 지재권 확보 추진

(2) 디자인 창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심의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예산(A)	'12년 요구(B)	증감	
			B-A	%
디자인 심사지원 (특허청)	1,750	2,298	548	31.3
상표디자인창출 기반조성 (특허청)	1,529	1,325	△204	△13.3
글로벌전문기술개발(디자인전문기술개발) (지경부)	161,490 (10,500)	170,297 (10,847)	8,807 (347)	5.5 (3.3)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 경쟁력에서 우수 디자인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디자인 창출에 대한 총 투자규모 수준은 매우 저조(약 138억원)
 - * 삼성과 애플 간 휴대폰의 외관 디자인, 화상 아이콘 등 디자인을 둘러싼 분쟁 등 우수 디자인 확보를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심화
- 우수 디자인을 창출하고 이를 권리로 연계하여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출-보호-활용 연계적 사업추진 미흡

□ 효율성 제고 방안

- (중복성 여부) 각 사업의 상이한 목적 및 추진 내용을 볼 때, 사업 간 중복성 및 조정 필요성은 없음
 - * 「디자인 심사지원」은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실무 지원이 목적
「상표디자인창출 기반조성」은 민간기업의 디자인창출 인프라 구축이 목적
「디자인 전문 기술개발」은 중소·중견기업들의 디자인 개발 지원이 목적
- (관련 사업의 추가 개발) 민간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기획, 개발 및 권리화를 통합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필요하므로 사업내용 확장 또는 신규 사업 추진 등 투자 확충

(3) 농업유전자원·생명자원의 확보 및 활용

□ 심의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예산(A)	'12년 요구(B)	증감	
			B-A	%
농업생명자원 연구 (농진청)	7,156	7,371	215	3.0
농업유전자원 연구 (농진청)	6,167	6,104	△63	△1.0
Golden Seed Project (농식품부)	-	40,370		(순증)

□ 현황 및 문제점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식량위기가 증대되고 있어, 산업으로서 농업의 역할이 점차 증대
-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확보부터 연구개발(종자개발), 상용화까지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

□ 효율성 제고 방안

- (필요성 검토) 사업의 성공적 추진시 파급효과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반드시 투자해야 할 사업

* 몬산토, 듀폰 등 거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시장 독점이 심화되고 있어 종자주권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시급

- (중복성 여부) 사업목적상* 중복은 없으나 상호 정보교환을 통해 동일 지원 대상 중복 선정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

* 「농업생명자원연구」는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 목적

「농업유전자원연구」는 국내외 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 목적

「Golden Seed Project」는 고부가가치 종자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 (개선 사항)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기술사업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과정에 지식재산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인 지식재산 창출 계획과 전략의 보강 필요

(4) 기술유출 방지

□ 심의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예산(A)	'12년 요구(B)	증감	
			B-A	%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기반 구축사업 (지경부)	932	1,000	68	7.3
중소기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기술유출방지사업) (중기청)	20,900 (2,660)	22,000 (3,600)	1,100 (940)	5.3 (35.3)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기술이 대기업 등에 부당하게 탈취되거나 경쟁기업에 유출되는 상황이 심각하나,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은 취약
 - *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사례 전체의 66%가 중소기업 기술('10년)

□ 효율성 제고 방안

- (중복성 여부) 각 부처의 사업 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업무 수행체계가 크게 상이하여 중복 조정 및 연계 필요성이 낮음
 - *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기반 구축사업」(지경부)은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확한 해외유출방지가 주목적
「기술유출 방지사업」(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가 주목적
- (개선사항)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기반 구축 사업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R&D 성과 활용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수립 및 집행 필요
- (개선사항) 기술유출방지 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크므로, 지속적 투자 확대 필요
 - 특히 '기술자료임치' 사업은 기대효과가 크나,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홍보 확대 필요

(5) 기술이전·거래를 위한 전담조직(TLO) 지원·육성

□ 심의대상 사업

사업명 (부처명)	예산 (단위: 백만원)			
	'11년 예산(A)	'12년 요구(B)	증감	
			B-A	%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선도TLO육성) (교과부)	24,300 (4,000)	35,100 (7,800)	10,800 (3,800)	44.0 (95.0)
기술확산지원 (선도TLO육성) (지경부)	24,700 (7,400)	24,700 (7,400)	0 (0)	0.0 (0.0)

□ 현황 및 문제점

- TLO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으나 TLO 자립 및 실질 사업조직으로 진화하지 못하는 상황
- TLO 지원·육성의 목적이 공통되나 교과부와 지경부에서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관건

□ 효율성 제고 방안

- (재정투자 필요성) 현재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TLO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수적
- (개선사항) 향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각 부처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
 - 각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추진 방향성 공유, 시너지 효과 창출, 예산 투입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
 - * 사업추진 초기 공동워크숍 개최, TLO-정부-관리기관 간 정기 실무 협의회 운영 등
 - TLO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하의 재정투자 필요
 - * 지원대상 선정평가시 TLO의 자립계획을 평가요소로 포함, TLO의 자립 계획에 따른 예산지원 차등화 등

V

향후 계획

1

정부 예산안 편성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자원배분방향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연구개발 사업)에 제출
 - 재정부 및 국과위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식재산 사업 예산 편성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분야별 자원배분방향 심의 내용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반영함으로써 지식재산 전략과 재정투입 계획과의 연계 강화

3

성과분석

- 관계부처는 지재위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식재산 사업의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 집행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정부 지식재산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차기 자원배분방향 심의 시 반영

분 야	세부 분야	지식재산 사업의 성격
창 출	①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과학기술분야에서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한 순수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② 문화콘텐츠분야 연구개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지식재산이 결합 분야인 문화콘텐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③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	인문사회분야에서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한 순수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④ 지식재산 창출 기반 조성	지식재산 창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지원·기획·관리
보 호	⑤ 지식재산 권리화	창출단계에서 만들어진 지식재산이 적절히 권리로 보호되도록 관련제도 운영 및 지원
	⑥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집행·단속 및 침해의 방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⑦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지식재산 분쟁해결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민간의 분쟁해결 역량 강화(법률구조·공익변리사 등)
활 용	⑧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지식재산을 직접 활용(거래·사업화)하는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
	⑨ 지식재산 활용 기반 조성	지식재산의 활용(거래·사업화)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
인프라	⑩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인식 고양 및 문화 조성
	⑪ 지식재산 인력양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
	⑫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	지식재산 정보의 가공·DB구축·관리 활동 및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⑬ 국가 지식재산 관리 및 대응 시스템	국가지식재산정책 거버넌스 운영, 지식재산 정책 기획·집행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전문기관 지원, 지역 및 국제 지식재산정책의 수행